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 
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 
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6. 8. 25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개정(제안)이유

-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』  
제450호에 의거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부합  
하지 않은 일부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주요골자

-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“**건설교통국장**” 에서 “**소관국장**” 으로, 부위원장을 “**교통지도과장**” 에서 “**소관과장**” 으로 개정 (안 제3조 제2항)

## 관련법규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호 (2005. 4. 6)

##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호(2005.4.6)에 의거 직제가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,
- 안 제3조 제2항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“**건설교통국장**” 에서 “**소관국장**” 으로 부위원장을 “**교통지도과장**” 에서 “**소관과장**” 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이보다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,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 위원장은 “**건설교통국장**” 으로, 부위원장은 “**교통행정과장**” 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9. 8.

보고자 : 이 남 식